

# Korean Tax Update

June 2020, Issue 72

## [조세뉴스]

---

### 기획재정부, 제 8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전문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5(목)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음. 주요 내용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의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한편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문보기]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함. 지금까지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였으나, 내년 부과분부터는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방침이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기로 함. 아울러 법인의 주택 양도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을 적용할 계획임. 한편 '부동산매매업'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국세청은 6.12(금)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훈령에 상세히 명시함. 또한 세무조사 중 상호합의절차 또는 과세기준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국세청은 6.18(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도 국선대리인제도 이용대상이 되면서 국선대리인제도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을 포함하고(국기법 제59조의2 제1항),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판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 두 32330 판결

-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이로써 얻는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에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사업(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 원고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 사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위 전입액이 수익사업 부문의 비용항목에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보아 수익사업에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건설회사가 협력업체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만큼 리베이트로 반환 받은 경우 건설회사의 조세포탈죄 기수시기를 차액을 반환받은 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 도 16864 판결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리베이트로 반환받은 사안에서, 검찰은 그 차액(리베이트)을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반환받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부풀린 가장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금액 중 그 차액은 손금산입의 요건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서는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 중 차액은 그 지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어야 할 소득으로서, 나중에 그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이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차치하고, 피고인 회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가 부풀린 공사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그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함. 이후 피고인 회사가 위 차액을 실제 반환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미 익금으로 확정된 권리가 실현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협력업체로부터 그 차액은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 될 수 없음. 따라서 가공경비를 지출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할 뿐, 그 가공경비 상당액을 리베이트로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죄는 성립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 등 (국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 두 40235 판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무효인지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

야 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이 사건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부칙 제13조에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부칙 제4조가 같은 부칙 제13조와 달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었다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 두 43411 판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양도대상 자산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인 점' 및 '양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세 회피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그와 같은 조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을 부여한 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의 방법으로 구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원고와 같은 대주주는 위 매도 당일 장 종료 무렵에 비교적 소량의 주문만으로도 상장주식의 증가를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거래당일의 증가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게 되면 그 상장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의 상장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은 상장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적절한 기간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길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심판례]

**상속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가격(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지 2055, 2020. 5. 7.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대법원 98두19193, 대법원 2002두240).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9지152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3276, 2020. 5. 18.

- 조특법의 각 개별 조세특례규정은 제2장부터 제6장 제1절까지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제132조는 조세특례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장 제2절에서,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제144조는 조세특례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제7장 보칙의 하위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각 개별 조세특례(제2장부터 제6장 제1절까지)의 각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제144조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조특법의 조문체계에 비추어 어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는 각 개별공제 규정이 제132조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일 뿐 이월공제세액을 본래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144조 제3항은 그 개정 전의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괄호부분과 단서 이하 각 호의 내용을 제1항에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신설된 조문에서 이월공제세액만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와 그 이후

의 이월공제세액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월공제세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감면의 한도를 제한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월공제세액도 투자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서 0054, 2020. 5. 21.

- 청구인은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 고지를 취소하는 것은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법인과 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전자신고시 제출 대상 지급명세서가 누락없이 제출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데, 법정 제출기한까지 쟁점지급명세서의 제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오류 검증 기능은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일 뿐, 오류 검증 기능에 의하여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2019.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부 1051, 2020. 5. 21.

- 처분청은 2013.2.15.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개정취지가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모두 해당된다고 봄은 당연한 것이고, 2019.2.12.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인력개발비가 추가로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를 정부지원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력개발비도 2013.2.15. 개정 이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2019.1.1.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이유에서 정부가 지원한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문언어 정한 그 명시적 의미에 앞선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2013.2.15. 동 규정 개정시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지원이라 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당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2019.2.12.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 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쟁점인력개발비 관련)을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환류소득 계산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소 3410, 2020. 6. 1.

-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과세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 목적의 미환류소득 법인세액 계산시 차감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법인세액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부 3804, 2020. 6. 1.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조심 2015서2043),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두6247, 조심 2011중2906),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두35902), 쟁점대여금의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동일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로써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시 세법상 제재를 가함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소유의 건물을 각자 분할등기한 것에 대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중 0791, 2020. 6. 1.

-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8부3808)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들은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분양 및 임대 실적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이 건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심사-2019-473, 2020. 5. 14.

- 이 사건 아파트는 창원 감계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로 조성된 지목이 대(垓)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비 등은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는 대(垓)인 토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하 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달리 보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옥상조경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윗부분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시설 등은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밖에 있는 지표면에 시공되어 옥상조경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19.12.31.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내용과 개정사유를 살펴볼 때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



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시설과 도로 일부가 지하 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 [예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K-IFRS 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2020. 4. 3.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5 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4 조 제 1 호를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영업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 조 제 2 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4 조 제 1 호를 적용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위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2020 4. 27.

- 위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8 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또한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 제 3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 2 조에 따른 수탁자인 공사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2020. 5. 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 44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적격인적분할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 2020. 5. 19.

-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 5. 26.

-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2020. 5. 27.

-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4 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 처리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2020. 5. 28.

- 「법인세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7.02.03. 대통령령 제 27828 호로 개정된 것) 제 84 조의 2 제 6 항 제 1 호 단서에 따라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기고] BUSINESS Watch, 조금 더 괜찮아진 기업상속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Directo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kr.kpmg.com](mailto:kr-fmtaxco@kr.kpmg.com)